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나.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
다.보관.관리기간:11.09.09 ~ 12.09.08

라.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

마.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
경남은행, 미래에셋증권, 신한금융투자,
동양증권, 씨티은행, 외환은행, 한화증권,
HSBC 은행, 대우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 전	변경 후
12.04.12	선취판매수수료인하	1.5%범위내	1.2%범위내
12.07.06	투자대상 자산	주식	외국 집합투자증권
12.07.06	펀드구분 변경	주식형	주식-재간접형
12.07.06	종류형 추가	-	종류 A-e 종류 C-w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|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|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사항 |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

부합하는지의 여부 | 적합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| 적정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| 공정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
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| 적정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
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
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
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적정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
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
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|
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
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
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